



제418회 국회 (정기회)
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우수 지자체 특별교부세 교부〉

■ 한병도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2068호)

2024. 11.

행 정 안 전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유상조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지방교부세 개요	2
2. 개정안 검토	3
(1) 개정안의 주요내용	3
(2) 개정안 검토	5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한병도의원 등 11인
2. 제안연월일 : 2024. 7. 22.
3. 회부연월일 : 2024. 7. 23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적 장려사업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,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이후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여 안정적인 성과 관리를 도모하고, 인구 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에 집중할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동 기금의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,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1항제3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한병도위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06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Ⅲ. 검토의견

1. 지방교부세 개요

지방교부세란 현행법 제2조제1호1)상 “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”하는 금전으로서 중앙정부-지방정부 및 지방정부간 재정력 편차를 보전해주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일환임.

지방교부세는 현행법2)에 따라 보통교부세·특별교부세·부동산교부세·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됨.

[지방교부세의 구분]

구분		목적	재원
보통교부세		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	내국세 정률분 ^{주)} 의 97%
특별교부세	지역현안	지연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 대응	내국세 정률분의 3% × 40%
	재난안전관리	재난복구 및 안전관리 수요 대응	내국세 정률분의 3% × 50%
	국가지방협력	국가적 장려사업 및 국가·지방 협력 사업 촉진	내국세 정률분의 3% × 10%
부동산교부세		지방세(종합토지세)를 국세(종합부동산세)로 전환한 후의 지방재원 감소 보전	종합부동산세의 100%
소방안전교부세		지방자치단체의 소방·안전 관리 강화 및 시설 확충 수요 대응	담배개별소비세의 45%

주) 내국세 정률분: 내국세에서 담배개별소비세 45% 및 종합부동산세·목적세를 제외한 것의 19.24%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2024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」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

1) 「지방교부세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지방교부세”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, 제9조,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.

2) 「지방교부세법」

제3조(교부세의 종류) 지방교부세(이하 “교부세”라 한다)의 종류는 보통교부세·특별교부세·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.

2. 개정안 검토

(1) 개정안의 주요내용

개정안은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의 교부요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결과가 우수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1항제3호).

현행	개정안
제9조(특별교부세의 교부)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.	제9조(특별교부세의 교부) ① ----- ----- -----.
1.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: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	1. (현행과 같음)
2.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: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	2. (현행과 같음)
3. 국가적 장려사업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, <u>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: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</u>	3. ----- ----- ---- <u>지역 역점시책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28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의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또는</u> ----- -----
② ~ ⑦ (생략) ³⁾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부 칙	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	

(2) 개정안 검토

현행법은 특별교부세를 ① 지역현안특별교부세(현행법 제9조제1항제1호), ②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(현행법 제9조제1항제2호), ③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(현행법 제9조제1항제3호)로 구분하며,

이 중 ③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의 교부요건을 i) 국가적 장려사업, ii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, iii) 지역역점시책, iv)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4가지로 규정하고 있음.

개정안은 이 교부요건에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28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의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”을 추가하려는 것임.

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국가가 10년간(2022~2931년) 매년 1조원씩 총 10조원의 국비를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소멸대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22회계연도부터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

3) 「지방교부세법」

제9조(특별교부세의 교부)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. 다만,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.

③ 삭제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.

⑦ 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특별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따라 17개 시·도가 공동 설립한 조합에 설치된 기금인데,

설치 2년차인 2023회계연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실행행률이 전체 배분액의 37.8% 수준에 그치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서, 기금 운용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.

[2023회계연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실적]

구분		배분액	집행액	집행률
기초계정	인구감소지역	7,104억원	1,370억원	19.3%
	관심지역	368억원	82억원	22.2%
광역계정		2,495억원	2,318억원	92.9%
합계		9,967억원	3,770억원	37.8%

자료: 행정안전부

다만, 이미 현행법 제28조4)는 기금관리주체인 조합이 매년 기금 성과를 분석하여 재원배분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이를 근거로 다음 표와 같이 전년도 성과 분석 결과(5점/총점 100점) 및 기존 집행실적(5점/총점 100점)을 2025년도 재원배분이 결정되는 개별 지방자치단체 투자계획 평가시 평가기준에 포함시키고 있음.⁵⁾

4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28조(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) ① 기금관리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,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와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의 체결 및 이행결과를 재원배분 시 반영할 수 있다.

5) 참고로,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자치단체 투자계획 평가기준에는 “성과 분석 결과” 항목은 없었고 “기존 집행실적” 항목은 1점만 배정되어 있었으나, 2025년도 평가기준에서 해당 항목들을 대폭 상향한 것임.

[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자치단체 투자계획 평가기준]

평가항목		세부 항목	배점
투자계획(80%)	계획수립적절성(15%)	여건 분석 적절성	5
		비전·전략 수립의 적절성	10
	사업계획타당성(35%)	입지 적정성	5
		사업 적합성	15
		사업 효과성	10
		사전행정절차 이행의 적정성	5
	계획의 연계성(20%)	기금사업 간 연계성	5
		지역 간 연계·협력성	5
		타 사업·정책과 연계성	10
	운영관리지속성(10%)	운영·관리 추진체계의 적절성	10
추진실적(10%)	성과분석결과	‘23년 성과분석 결과(5등급)	5
	집행	‘22-’23년 배분 기금 집행실적	5
정책연계(3%)	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과의 연계성		3
정량지표(7%)	인구 감소 지수		3
	투자협약 실적		4
소계			100
가점(10)	중점사업 추진 가능성		10
감점(-4)	기금 목적 외 사용		-3
	사업 변경		-1

자료: 행정안전부

따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경우 특별교부세 교부라는 새로운 유인구조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기존 지방자치단체 투자계획 평가기준에서 관련 항목의 배점을 상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음.⁶⁾

6) 후자의 경우 ① 제도를 간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운용상 효율적일 수 있고, ② 집행부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될 재원 일부를 집행이 원활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함으로써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미집행 상황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.

참고로, 행정안전부는 ① 이미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분석 결과를 재원배분에 반영하고 있고, ②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의 추가 교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현행법상 교부요건 중 하나인 “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”을 근거로 이를 실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,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음.

한편, 동 개정안과 함께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, ② 국비 출연 규모를 연 2조원으로 상향하며, ③ 국비 출연 외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복권수익금을 재원에 추가하고, ④ 전년도 성과 분석 외에 직전 5년간의 성과 분석 제도를 도입하는 의안번호 제2064호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한병도의원 등 13인)」이 발의되어 있는데,

내용상 동 개정안의 의결이 반드시 후자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, 두 개정안이 동시 발의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문 의 처
02)6788-5333